



국·공유재산관리제도해설(II)

김 두 수

행정자치부 공기업과 서기관

라. 公用收用の 制限

토지수용법 제5조에 “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는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

이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없다”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공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수용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.

그러나 도시재개발법에서는 사업시행자

[국유재산의 관리체계도]

